■ 중대범죄수사청 사건사무규칙 [별지 제16호서식]

수사 중 이의제기서

<table>
<tr><td>성명</td><td colspan="2"></td><td>생년월일</td><td></td></tr>
<tr><td>주소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연락처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사건과의 관계</td><td colspan="4">[] 고소인 [] 고발인 [] 피해자 [] 법정대리인</td></tr>
<tr><td rowspan="2">대상사건</td><td>죄 명</td><td colspan="3"></td></tr>
<tr><td>수사관서</td><td></td><td>사건번호</td><td></td></tr>
<tr><td>이의제기 사유
(해당란 체크)</td><td colspan="4">[] 수사를 개시한 후 6개월 이상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조사 등 실질적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

[] 수사관이 「형사소송법」 및 다른 법령에 따른 고소인등의 권리를 침해한 경우

[]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는 위법·부당한 수사행위가 있는 경우</td></tr>
<tr><td>구체적 사유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tr><td>첨부서류</td><td colspan="4"></td></tr>
</table>

「형사소송법」 제245조의11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.

년 월 일

이의제기인 (서명 또는 인)

○○지방중대범죄수사청장 귀하

210㎜ × 297㎜(백상지 80g/㎡)